

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|
| 15년이상 | 16년미만 | 월 84,000 원 | |
| 16년이상 | 17년미만 | 월 86,000 원 | |
| 17년이상 | 18년미만 | 월 88,000 원 | |
| 18년이상 | 19년미만 | 월 90,000 원 | |
| 19년이상 | 20년미만 | 월 92,000 원 | |
| 20년이상 | 21년미만 | 월 94,000 원 | |
| 21년이상 | 22년미만 | 월 96,000 원 | |
| 22년이상 | 23년미만 | 월 97,000 원 | |
| 23년이상 | 24년미만 | 월 98,000 원 | |
| 24년이상 | 25년미만 | 월 99,000 원 | |
| 25년이상 | | 월 100,000 원 | |

【 7 】 양주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교자 함.

주요골자

◦ 법적용 규정 개정

- . 현행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
- . 개정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증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

의한 사업장에” 를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8 】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1조 (목적)중 “법 제84조”를 “법 제92조”로
동법 시행령 “제26조의2”를 “제50조의2”로,
- 동조례 제2조 (부과대상) 제1호중 “법 제10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 “제13조
제2항”을 “법 제23조제2항”으로, 제2호중 “법 제22조(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
를 포함한다)”를 “법 제35조(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, “제31조
제1항”을 “제47조제1항”으로 제3호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49조제3항”으로 개정.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법 제84조”를 “법 제92조”로 하고, “동법시행령 제26조의 2”를 “동법시행